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3. 11. 29(수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
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2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의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위한 분뇨 수집·운반업체 대행 재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방법 변경(안 제5조3항)
- 나.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 신설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분노 수집·운반업체의 대행 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분노수집·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방법 변경(안 제5조3항)
 - 재계약 방법을 적격심사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함
- 2)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 신설)
 - 적격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함
- 3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분노 수집·운반업체의 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를 신설하여 업체와의 계약 및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이와 관련하여, 적격심사에 따른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.

관계법령

하수도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27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**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** <개정 2011. 4. 5., 2012. 2. 1., 2013. 7. 16., 2020. 5. 26.>

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>

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5., 2013. 7. 16., 2020. 5. 26.>

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5. 26.>